

4. 산재보험보상의 종류와 금액 (규정 제25조)

종 류	지급사유	지급액	비고
요양급여	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(4일이상의 요양)	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 (약값 포함)	회사 본인부담액 보상 및 산 재법령 미적용자 보상
휴업급여	산재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	평균임금의 70%	회사 휴업급여 차액보상
장해급여	업무상재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	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(1등급 1,474일분 ~ 14등급 55일분)	1~3등급:연금 4~7등급:연금 또는 일시금 8~14등급:일시금
간병급여	요양종결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(장해 1~2등급)	상시간병:1일 26,000원 수시간병:1일 17,340원	노동부장관 고시 (2000.7.1 신설)
유족급여	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	연금: (평균임금 * 365) * 47% + 부양가족수 * 5% (부양가족은 최고4인까지) 일시금:1,300일분	연금지급원칙 (일시금 50% 지급가)
상병보상 연금	요양개시 2년 경과후 폐질 1~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	폐질등급에 따라 지급 (1등급 329일분 ~ 3등급 257일분)	연금만 가능 (휴업급여 지급중단) 요양개시 3년 경과후 상병연금 수급자는 해고가능
장의비	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	평균임금의 120일분 (최저 5,755,730원 ~ 최고 8,599,940원)	최고,최저한도 신설 유족보상과 동시에 청구

- 최고보상기준임금 : 122,807원(1일)
- 최저보상기준임금 : 28,000원(1일)
- ☎ 문의 : 산업안전국 (031-727-4835)